



산업안전 Q & A



공사금액 5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승인(아파트)을 받아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서상의 사업비 중 대지비가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에 있어서 대지매입비는 제외됨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 변경시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증감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답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증감 선임하고 노무비, 자재비 등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사유 :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공사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위험도도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공사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단지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위험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임.

〈율설〉

공사금액 변경원인을 불문하고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공사금액으로 하고, 공사금액 변경원인을 구분하여 별도의 단서가 없으므로 법 적용을 일관성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당초 낙찰 당시의 총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바

- 설계(자재물량, 작업근로자수) 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이 아닌 단지 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한 지상높이 31m의 기준은 근로자가 작업을 행하는 장소까지 포함한 높이인지 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만을 말하는지 여부

〈답설〉

동 높이 기준은 건축관련 기본법인 건축법상 건축높이로 보아야 함

〈을설〉

모든 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법 등에서 법적 목표에 따라 근로자의 범위를 서로 달리 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높이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자의 작업위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갑설이 타당함(건축법상의 건축높이로 보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축물, 지상높이의 기준, 최고높이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각종 기준은 건축물에 대한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최고높이는 특별법적인 건축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사료됨.



자연환경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납땜업무 범위와 당해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51조 제5호 파목의 자연환경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납땜업무라 함은

- 작업장의 개방된 창면적이 바닥면적의 1/20미만 또는 창문이 없는 옥내 작업장에서 납땜하는 업무를 말하며
- 당해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외국회사를 포함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도급 분할시공방식으로 TURN - KEY로 계약되었을 경우 외국회사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주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비적용 또는 일부 적용)하는 바.

- 외국회사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레스는 Air Clutch타입(마찰클러치 타입)의 크랭크프레스로서 다음 각항의 성능을 구비하고 있음.

- 가. 1행정 1정지기구가 구비되고 있고
- 나. 감응식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 다. 제기동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양손으로 누름보턴 작동시 슬라이드 하강중 한 손 또는 양손을 놓으면 슬라이드가 즉시 정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 라. Foot S/W를 밟고 있다가 발을 떼면 슬라이드가 하강중 즉시 정지하는 구조이며
- 마. 용량은

압력능력	600톤	400톤	60톤	30톤
S P M	13 - 25	14 - 20	45	60

(1) 이 경우 가항 및 나항의 조건만을 갖춘 프레스에도 양수조작식 방호방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가항, 나항 및 다항의 조건을 갖춘 프레스에 미검정품인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도 검정품인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자동송급 장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도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이 경우 가항 내지 라항의 조건을 갖춘 프레스에도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1), (3)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및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기준”(고시 제91-50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프레스에는 해당구조에 적합한 방호조치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 귀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레스와 같이 에어클러치타입의 크랭크프레스로서 슬라이드 작동중 정지가 가능한 구조이고, 감응식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다만, (2)와 같이 감응식 방호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프레스에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추가로 부착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방호장치도 반드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함.

☞ 참고사항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기준(고시 제93-41호)으로 개정

